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

- ☐ 상무1동 공영주차장 조성
 - ☐ 화정3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 [교통지도과 2건]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

○ 회계명 : 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m², 백만원)

[illegible]

□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취득 대상 재산 (토지·건물 매입)

○ 회계명: 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m², 백만원)

연번	구분	재산표시 소재지	취득 대상수량 (연면적)	추정가액 (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주관부서)
1	토지	쌍촌동 1271-6	1 (390.2)	1,705	2026~	공영주차장 조성	교통지도과
2		쌍촌동 1271-7	1 (390.4)	1,706			
3		화정동 818-5	1 (174.8)	292			
4		화정동 818-6	1 (174.8)	292			
5		화정동 818-7	1 (174.8)	292			
6		화정동 818-14	1 (174.8)	281			
7		화정동 818-15	1 (174.8)	281			
8		화정동 818-16	1 (174.7)	281			
9	건물	쌍촌동 1271-6	1 (376.91)	334			
10		쌍촌동 1271-7	1 (380.44)	202			
11		화정동 818-5	1 (162.76)	82			
12		화정동 818-6	1 (146.07)	111			
13		화정동 818-7	1 (100.57)	97			
14		화정동 818-14	1 (162.66)	88			
15		화정동 818-15	1 (157.845)	100			
16		화정동 818-16	1 (138.78)	84			
합계	토지		8 (1829.3)	5,130			
	건물		8 (1626.035)	1,098			

□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처분대상 재산 (건물의 철거)

○ 회계명 : 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m², 백만원)

연번	구분	재산표시	처 분 대상수량 (연면적)	추정가액 (예정가격)	처분시기	처분사유	비고 (주관부서)
		소재지					
1	건물	쌍촌동 1271-6	1 (376.91)	334	2026~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건물 해체	교통지도과
2		쌍촌동 1271-7	1 (380.44)	202			
3		화정동 818-5	1 (162.76)	82			
4		화정동 818-6	1 (146.07)	111			
5		화정동 818-7	1 (100.57)	97			
6		화정동 818-14	1 (162.66)	88			
7		화정동 818-15	1 (157.845)	100			
8		화정동 818-16	1 (138.78)	84			
합계		건물	8 (1626.035)	1,098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6년 3월
제 출 자 서 구 청 장

1. 제안사유

- 상무1동 공영주차장 조성 외 1건에 관한 사항으로, 금회 부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을 취득·관리하고자 함

2. 관리계획 주요내용(2건)

- 상무1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 화정3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3. 취득대상 재산현황

□ 상무1동 공영주차장 조성

- 주관부서: 교통지도과
- 사업기간: 2026. 1. ~ 2027. 12.
- 사업위치: 쌍촌동 1271-6, 1271-7번지
- 사업규모: 지평식 주차장 약 32면 조성($A=780.6m^2$)
- 총사업비: 4,700백만원(주차장 특별회계)
 - 토지매입: 40억원
 - 철거 설계 및 공사비: 4억원
 - 조성 설계 및 공사비: 3억원
- 재산현황

(단위: m^2 , 백만원)

소재지	종류	면적(연면적)		도시계획	사업비	조성계획
		토지	건물			
쌍촌동 1271-6 쌍촌동 1271-7	토지, 건물	780.6	757.35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4,700	- 규모: 약 32면 - 용도: 공영주차장 조성

□ 화정3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 주관부서: 교통지도과
- 사업기간: 2026. 1. ~ 2027. 12.
- 사업위치: 화정동 818-5, 818-6, 818-7, 818-14, 818-15, 818-16번지
- 사업규모: 지평식 주차장 약 39면 조성($A=1,048.7\text{m}^2$)
- 총사업비: 3,000백만원(시 1,320, 구 1,680)
 - 토지매입: 23억원
 - 철거 설계 및 공사비: 4억원
 - 조성 설계 및 공사비: 3억원
- 재산현황

(단위: m^2 , 백만원)

소재지	종류	면적(연면적)		도시계획	사업비	조성계획
		토지	건물			
화정동 818-5 외 5	토지, 건물	1,048.7	868.685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3,000	- 규모: 약 39면 - 용도: 공영주차장 조성

4. 제안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참고자료】

- 관계법령, 위치도, 현장사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요구서(사본)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2]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상무1동 공영주차장 조성



○ 화정3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위 치 도



현장사진



[참고자료 3]

☐ 2026년 제1회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서

○ 상무1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서

안 건	상무1동 공영주차장 조성
주 문	○ 원안대로 의결함 < 심의대상 > ○ 사업기간 : 2026. 1. ~ 2027. 12. ○ 사업위치 : 서구 쌍촌동 1271-6, 1271-7번지 (재산관리관 : 교통지도과) ○ 사업내용 : 지평식 주차장 조성 약 32면 ○ 규 모 : A=780.6㎡(2필지) ○ 사 업 비 : 4,700백만원(주차장특별회계)
사 유	○ 상무1동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하여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정주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함

위와 같이 의결한다.

2026. 2. 2.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심의회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구 분	성 명	서 명	
			가	부			가	부
위 원 장	부 구 청 장	김 성 배	김성배		위 원	홍 진 석	홍진석	
부위원장	행정재정국장	전 영 채	전영채		위 원	김 수 만	김수만	
위 원	회계정보과장	정 영 주	정영주		위 원	오 영 란	오영란	
위 원	도시공간과장	심 남 식	심남식		위 원	김 여 원		
위 원	건설과장	이 승 구	이승구		위 원	황 승 국	황승국	
					위 원	심 혁		

○ 화정3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서

안 건	화정3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주 문	○ 원안대로 의결함 < 심의대상 > ○ 사업기간 : 2026. 1. ~ 2027. 12. ○ 사업위치 : 서구 화정동 818-5, 818-6, 818-7, 818-14, 818-15, 818-16번지 (재산관리관 : 교통지도과) ○ 사업내용 : 지평식 주차장 조성 약 39면 ○ 규 모 : A=1,048.7㎡(6필지) ○ 사 업 비 : 3,000백만원(시 1,320, 구 1,680)
사 유	○ 화정3동은 주택 밀집과 도로 여건으로 인해 만성적인 주차난 및 안전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위와 같이 의결한다.

2026. 2. 2.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심의회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구 분	성 명	서 명	
			가	부			가	부
위 원 장	부 구 청 장	김 성 배			위 원	홍 진 석		
부위원장	행정재정국장	전 영 체			위 원	김 수 민		
위 원	회계정보과장	정 영 주			위 원	오 영 란		
위 원	도시공간과장	심 남 식			위 원	김 여 원		
위 원	건설과장	이 승 구			위 원	황 승 국		
					위 원	심 혁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요구서

구 분	취득	주관부서	교통지도과	일련번호	2026-01
심의안건	상무1동 공영주차장 조성				
심 의 요 구 내 용	○ 사업기간 : 2026. 1. ~ 2027. 12. ○ 사업위치 : 서구 쌍촌동 1271-6, 1271-7번지 (재산관리관 : 교통지도과) ○ 사업내용 : 지평식 주차장 조성 약 32면 ○ 규 모 : A=780.6㎡(2필지) ○ 사 업 비 : 4,700백만원(주차장특별회계)				
사 유	○ 상무1동은 주택·원룸 및 상가 밀집지역으로 건물 내 주차공간 부족에 따라 상가 이용객과 거주민의 주차장 조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또한, 목적지 인근에 주차하려는 편의주의와 협소한 도로 여건으로 이면도로에 주·야간 무질서한 주차로 차량 교행 곤란 및 비상 차량 통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함 ○ 따라서,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등 정주 환경 전반에 걸친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상무1동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심의회의 업무)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일
교통지도과장 배 석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심의회위원장 귀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요구서

구 분	취득	주관부서	교통지도과	일련번호	2026-02
심의안건	화정3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심 의 요 구 내 용	○ 사업기간 : 2026. 1. ~ 2027. 12. ○ 사업위치 : 서구 화정동 818-5, 818-6, 818-7, 818-14, 818-15, 818-16번지 (재산관리관 : 교통지도과) ○ 사업내용 : 지평식 주차장 조성 약 39면 ○ 규 모 : A=1,048.7㎡(6필지) ○ 사 업 비 : 3,000백만원(시 1,320, 구 1,680)				
사 유	○ 화정3동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주택 내 차고지 등 별도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만성적인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 협소한 이면도로 특성상 주·야간 무질서한 주차가 빈번해 차량 교행이 어렵고 비상 차량 통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주차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및 다수인 민원 등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고 비상 상황 시 안전사고 예방 등 정주 환경 전반에 걸친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화정3동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심의회의 업무)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일
교통지도과장 배 석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심의회위원장 귀하